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영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5. 4. 25
- 제 안 자 : 영등포구청장

□ 제정(제안) 이유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률이 제정(2004.3.11) 공포되어 종전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통합하여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우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법정 적립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안 제4조)
-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하는 이자는 경하는 용도에 사용한다.(안 제5조)
- 기금의 사용용도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한 용도 등에 사용한다. (안 제6조)
-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7조)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안 제10조)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안 제11조)

□ 관 련 법 규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해 각각 운용되어 온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여 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서 정한 재난예방, 재난피해 시설응급복구, 주민에 대한 지원, 하천·하수도정비사업, 제설용 장비구입, 긴급구조장비구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구의 기금은 현재 19억 4천 6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 5. 6

보고자 : 김찬재